

2015 KIF-프리미어 IT 전문투자조합

(주)체인파트너스
준거 실사보고서

2018. 4. 4

목 차

준거 실사보고서 -----	2
1. 투자검토기업 -----	3
2. 투자검토대상 -----	3
3. 투자담당자 -----	3
4. 중소기업 해당여부 등 확인 -----	4
5. 준법사항 확인 -----	5
6. 투용자규정의 준수 검증 -----	8
7. 도덕적 해이 검증 -----	9
8. 준거실사 결과 -----	10
[별 첨]	
1. 회사개요 및 중점투자 해당여부 검토 -----	11
2. 2015 KIF-프리미어 IT 전문투자조합 출자자 현황 -----	13
3. 검증대상 특수관계인 -----	14
4. 펀드매니저의 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	15
5. 경영자의 윤리 및 재무확인서 -----	17

대표전화 : (02) 539 - 0133

팩시밀리 : (02) 539 - 0130

http : //www.charmbiz.com

참
회계
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06732]

준거 실사보고서

2015 KIF-프리미어 IT 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및 출자자 귀중

우리는 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주)체인파트너스에 대한 투자 검토 건에 대해 본 보고서일자를 기준일로 하여 귀 조합이 요청한 준거항목에 대한 실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수행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우리는 이에 대하여 감사의 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실사대상 항목과 항목별 실사결과는 '4. 중소기업 해당 등 확인' ~ '7. 도덕적 해이 검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위반사항 또는 특기할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귀 조합을 위한 것이며, 귀 조합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참 회 계 법 인
담당사원 / 공인회계사 황 기 동
2018년 4월 4일



1. 투자검토기업

업체명	(주)체인파트너스		
사업자번호	604-81-42515	대표이사	표철민
투자지분율	2.89%	투자구분	국내(0), 해외()

2. 투자검토대상

투자유형 및 투자금액

구 분	취득주식수	투자금액	투자단가
신주 (보통주)	-	-	-
신주 (상환전환우선주)	501 주	1,996,449,429 원	3,984,929 원/주
무담보 전환사채	-	-	-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	-	-
프로젝트	-	-	-
구주	-	-	-
기타()	-	-	-
합 계	501 주	1,996,449,429 원	3,984,929 원/주

동반투자예상내역 (운용사내 타조합, 타VC동반 투자내역)

구 분	투자재원	투자금액	투자단가
운용사내 타조합	-	-	-
고유자금/타 VC 등	코오롱인베스트먼트	2,498,550,483 원	3,984,929 원/주
	DSC 인베스트먼트	1,996,449,429 원	3,984,929 원/주
	KB 인베스트먼트	1,996,449,429 원	3,984,929 원/주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1,996,449,429 원	3,984,929 원/주
	엔베스터	1,996,449,429 원	3,984,929 원/주
	캡스톤파트너스	1,498,333,304 원	3,984,929 원/주

3. 투자 담당자

발굴자	김호경	심사자	조준연, 김호경	사후관리자	김호경
-----	-----	-----	----------	-------	-----

4. 중소기업 해당여부 등 확인

기 준	요 건		검토결과
벤처기업 해당여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요건 충족여부		적
중소기업 해당여부 검토	매출액 · 자산 기준	<p>○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p> <p>①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p> <p>②자산총액이 5 천억원 미만일 것</p>	적
	소유 · 경영의 독립성	<p>○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p> <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p> <p>-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등의 100 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p> <p>-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p>	
	유예 기간	<p>○중소기업 기준 초과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 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다만, 아래의 경우 제외</p> <p>* 제외사항</p> <p>-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p> <p>-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p> <p>-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위 소유·경영의 독립성 요건 중 첫 번째 또는 두 번째)</p> <p>-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5. 준법사항 확인

□ 법령상 투자제한

내 용	평가		비 고
	원칙	실제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재산 사용 여부	부	부	벤처특별법 제4조의4 제2항 제1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	부	부	벤처특별법 제4조4 제2항 제3호, 공정거래법 제9조
거래대상이 금융기관 주식 해당 여부 (벤처특별법 제4조의4 제2항 제4호)	부	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산업발전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8 항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 단, SPAC 발기인 또는 PEF 의 업무 집행사원 참여는 예외
특수관계인과 거래여부 1. 운용사가 결성한 타 투자조합(x) 2. 운용사의 특수관계인(x) 3. 운용사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x) 4. 운용사가 결성한 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x)	부	부	벤처특별법시행령 제 3 조의 9 제 3 항 <u>* 거래상대방 : 해당없음</u> * 주요주주 : 10%이상 또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 * 주요출자자 : 10%이상 * 검증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별첨 3>에 한함
운용사가 운용하는 타조합과 거래여부	부	부	
피투자회사 경영자의 윤리 및 재무확인서상 조합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증개하는 행위 여부	부	부	벤처특별법 제3조의9 제3항 제3호
이면계약 행위	부	부	벤처특별법 제3조의9 제3항 제4호
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동프로젝트 투자시 중소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인지 여부	여	NA	
펀드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기타 타 법령 위반여부	부	부	법령명 : - 위반내역 : -

□ 규약상 투자제한

내 용	평가		비 고
	원 칙	실 제	
신주 등 투자로서 제 36 조 제 1 항 제 1~4 호의 투자 인지 여부(“주목적투자”) - 코넥스상장 또는 비상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0) - 코넥스상장 또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프로젝트투자 (x)	적	적	기준 : 출자약정액의 60% 이상
신주 등 투자로서 제 36 조 제 2 항 제 1 호 중점투자 분야 투자인지 여부 중점투자 : K-ICT 9 대 전략사업(소프트웨어, 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UHD, 스마트디바이스, 디지털 콘텐츠, 빅데이터) 및 핀테크 등 ICT 융합 관련 등에 투자하는 것(규약 제 4 조 제 9 호)	적 부	적*	기준 : 납입출자금의 60% 이상 (*)소프트웨어, 핀테크
신주 등 투자로서 제 36 조 제 2 항 제 1 호 IT일반 및 IT 융복합 분야 투자인지 여부	적 부	적	조합비용을 제외한 잔여 납입출자금 총액
신주 등 투자로서 제 36 조 제 2 항 제 2 호 조합성립 일로부터 3 년 내 투자인지 여부 (조합성립일 : 2016-02-26 일)	적 부	적	기준 : 중점투자분야에 납입출자금 총액의 60% 이상 투자/출자 약정금 총액의 60% 이상 및 동기간 내 중점투자분야 비중이 투자금 총액의 50% 이상
해외투자여부	부	부	제36조 제3항
동일기업 등에 대한 투자한도(20%) 준수여부 - 투자금액 : 1,996 백만원 - 기준 1: 출자약정금총액 * 20% : 8,000 백만원 이내 - 기준 2: 투자지분을 50% 미만	적	적	조합규약 제36조 제14항
후행투자 여부 - 운용사 본계정, 운용 타조합 투자 기업여부(x) - 운용사 특수관계인 투자한 기업 여부(x)	부	부	*조합규약 제36조 제4,5항 *동일시기, 동일조건은 가능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구주 및 기발행한 신주인수 권부사채, 전환사채 인수방식의 투자여부 - 투자금액 : -백만원 - 기준: 납입출자금 총액 * 20% 이내	한 도 내	NA	조합규약 제 36 조 제 8 항 기준 : 납입출자금 총액의 20% 이내
자금 대여 방식의 투자 및 자금운용 여부	부	부	조합규약 제36조 제9항
투자기간 경과후 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투자기간중 투자결정을 한 투자의 집행 (x) - 기 투자업체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특별 결의 로 인한 추가투자 (x) - 조합원총회 전원 동의를 얻은 경우 (x)	부	부	조합규약 제36조 제10항 투자기간:2020년 2월 25일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여부	적	적	투심위예정일: 2018년 4월 12일

투자비율 달성여부(본건 직전 투자집행실적 기준, 투심위승인을 받은 집행예정액 포함)

구 분	실적치	기 준
주목적	금액 : 24,576백만원 비율 : 61.4%	출자약정금 총액 * 60%
중점투자분야	금액 : 24,576백만원 비율 : 78.8%	납입출자금 총액 * 60% (납입출자금 = 31,200백만원)
3년내 투자액	금액 : 29,596백만원 비율 : 74.0%	출자약정금 총액 * 60%,
3년내 중점투자분야 투자액	금액 : 24,576백만원 비율 : 83.0%	총투자금액 * 50%

투자금 실사 관련 점검항목

투심위 보고내용	투자금사용목적	인건비 등 운영자금, 거래소, EOSys 등 신규사업 확장비용		
계약서(안)	투자금사용목적	㉠ · ㉡	위반시 제재방안	㉠ · ㉡
	대상거래인지방안	㉠ · ㉡	대상거래발생시 처리방안	㉠ · ㉡
	투자금실사시기	㉠ · ㉡		

6. 투융자규정의 준수 검증

내 용	평가		비 고
	원칙	실제	
기초심사자료의 합리적 수준의 완전성 여부 1.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0) 2.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외부자료 수집 및 검토 (0) 3. 대상기업 방문, 주요경영진 면담 및 외부전문가 의견 청취 등 (0) 4. 기초심사보고서 작성 혹은 내부 투심위 (0)	적	적	
본심사자료의 합리적 수준의 완전성 여부 1. 기초심사단계 정보의 명확화 및 구체화 (0) 2. 회계 및 법률자문 등 외부자문기관의 의견수집 (0) 3. 주요경영진에 대한 인적, 경력사항 및 평판정보 수집 (0) 4. 투자 및 회수방안수립 (0) 5. 대상기업의 정관 등에 투융자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0) 6. 본심사보고서 작성 (예정)	적	적	

7. 도덕적 해이 검증

내 용	평가		비 고
	원칙	실제	
투자대상회사의 윤리 및 재무확인서상 펀드매니저 및 동거인의 부당이익의 수수 여부 확인 1. 업무관련자로부터 선물/접대/뇌물 등의 요구 또는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x) 2. 피투자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여부 (x) 3. 피투자회사에의 취업/인사청탁 여부 (x) 4. 불공정 상거래 또는 용역거래 존재 여부 (x) 5.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x)	부	부	검증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별첨3] 동거인 등 현황에 기재된 자료 한정하며, 이하 같음
펀드매니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펀드매니저 및 동거인이 1. 과거 1년내 피투자회사의 주식 취득, 자금대차,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의 관계 여부 (x) 2. 과거 1년내 피투자회사의 임원 또는 주주 여부 (x)	부	부	
운용사임직원의 비상장주식 보유현황 신고서 상 피투자회사의 주식의 포함 여부	부	부	
대표펀드매니저에게 해당 펀드매니저에 대한 법규위반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 질의 확인 벤처특별법, 조합규약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 및 규정 등 관련 규정의 위반을 통보받은 사실 여부	부	부	
윤리규정준수확인서 제출 여부 1. 심사담당자의 윤리규정준수확인서 2. 피투자회사 경영자의 윤리 및 재무확인서	적 적	적 적	[별첨 4] [별첨 5]

8. 준거실사 결과

(주)체인파트너스에 대한 투자 건과 관련하여 상기한 중소·벤처기업 여부, 준법사항, 투융자규정의 준수 및 도덕적 해이 검증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8년 4월 4일

대표펀드매니저 : 조 준 연 (인/서명)

[별첨 1] 회사개요 및 중점투자 해당여부 검토

□ 회사개요

구 분	내 용					
회사명	(주)체인파트너스					
사업목적	가상화폐 종합 금융서비스					
대표이사	표철민					
회사성격	비상장, 중소기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4 층(저동 1 가, 대신파이낸스센터)					
설립일	2017-07-26					
사업자등록번호	604-81-42515					
임직원수	41 명					
자본금	13,802,000 원					
창업초기기업(*1)	해당함					
주요재무 -회사제시 기준	단위 : 백만원, 2017-12-31 일 현재					
	자산총계	1,858	부채총계	27	자본총계	1,831
	매출액	-	영업이익	(315)	당기순이익	(315)

(*1) 조합규약 제4조 34호에 따라 KIF투자조합의 "창업초기기업"이라 함은 최초 투자 당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초기기업을 M&A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결성액의 30% 한도) 및 창업초기기업 투자 후 3년 내 후속 투자하는 경우 창업초기기업투자를 말합니다.

□ 주요인력 현황

성명	직위	주요경력
표철민	CEO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경영학과 졸업 (1985.11.09) 2000 년~2004 년 다드림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2006 년~2015 년 위자드웍스 대표이사 2010 년~2012 년 루비콘게임즈 대표이사 2013 년~2015 년 벤처기업협회 이사
이재철	CTO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1980.11.24) 2004 년~2007 년 Macro Image Technology 2008 년~2010 년 MBC 소프트웨어 개발자 2010 년~2012 년 Google 소프트웨어 개발자 2012 년~2014 년 pooq 개발 총괄 2014 년~2015 년 Riid CTO 2015 년~2017 년 Skelter Labs Tech Lead

성명	직위	주요경력
최재석	COO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1979.11.16) 2008 년~2011 년 위자드웍스 이사 2012 년~2014 년 아이디어포크 대표이사 2014 년~2016 년 엘로스토리 이사/서비스총괄본부장

□ 주주명부

(단위 : 주)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 고
표철민	5,250	38.04%	대표이사
이재철	2,100	15.22%	임원
최재석	1,418	10.27%	임원
기타 임직원	1,232	8.93%	임직원
LI SHULAI	500	3.62%	
DSC 유망서비스산업펀드	1,651	11.96%	RCPS
2015KIF-캡스톤 K-Global IoT 초기투자조합	825	5.98%	RCPS
장덕수	746	5.41%	RCPS
기타 개인	80	0.58%	RCPS
합 계	13,802	100.00%	

□ 중점투자요건 검토

구 분	내 용	검토결과
사업분야 해당여부	K-ICT 9대 전략사업(소프트웨어 , 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UHD, 스마트디바이스, 디지털 콘텐츠, 빅데이터) 및 핀테크 등 ICT 융합 관련 등	적 (소프트웨어, 핀테크)

[별첨 2] 2015 KIF-프리미어 IT 전문투자조합 출자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자 약정금	출자금 잔액	지분율	주요주주/ 이해관계자
KIF 투자조합	20,000,000	15,100,000	50.0%	
한국산업은행	8,000,000	6,040,000	20.0%	
중소기업은행	3,000,000	2,265,000	7.5%	
한국모태펀드	2,000,000	1,510,000	5.0%	
신한캐피탈㈜	2,000,000	1,510,000	5.0%	
㈜케이오인베스트먼트	2,000,000	1,510,000	5.0%	
알케이캐피탈㈜	500,000	377,500	1.3%	
동인아이앤지㈜	500,000	377,500	1.3%	
정성인	150,000	113,250	0.4%	
송혁진	150,000	113,250	0.4%	
조준연	100,000	75,500	0.3%	
프리미어파트너스(유)	1,600,000	1,208,000	4.0%	정성인, 송혁진, 김성은, 조준연, 이동훈
합 계	40,000,000	30,200,000	100.0%	

[별첨 3] 검증대상 특수관계인

1.1 운용사가 운용중인 투자조합

순번	조 합 명
1	2010 KIF-프리미어 투자조합
2	프리미어 Growth-M&A 투자조합
3	2015 KIF-프리미어 IT 전문투자조합
4	프리미어 글로벌 이노베이션 1호 투자조합

1.2 운용사의 주요주주(10%) 및 특수관계인

성 명	출자액	지분율	동거인 등
정성인	343	34.3%	유민재, 정혜승, 정혜욱
송혁진	343	34.3%	김은지, 송민준, 송민경
김성은	100	10.0%	이윤주, 김도형
조준연	100	10.0%	이주원, 조현진, 조성원
이동훈	100	10.0%	박정란, 이정민, 이정원
합계	986	98.6%	

1.3 운용사가 결성한 투자조합별 주요출자자(10%)의 지분율

조합출자자	2010 KIF-프리미어 투자조합	프리미어 Growth-M&A 투자조합	프리미어 글로벌 이노베이션 1호 투자조합
한국모태펀드	8.0%	4.8%	40.0%
국민연금공단	50.0%	48.3%	-
KIF 투자조합	20.0%	-	-
NHN 인베스트먼트(주)	15.0%	11.8%	-
성장금융 성장사다리 (정책금융)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	-	13.3%

[별첨 4] 펀드매니저의 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피투자회사명 : (주)체인파트너스

1. 본인은 상기 피투자회사(또는 구주의 경우 거래상대방, 이하 통칭“피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내부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1)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사용
- (2) 조합 명의로 제 3 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 (3) 조합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조합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 조합의 타인을 위한 보증행위 여부
- (4) 운용사가 결성한 타 투자조합, 운용사의 특수관계인, 운용사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운용사가 결성한 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 (5) 운용사가 결성한 투자조합간의 상호거래, 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의 상호거래, 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의 상호거래
- (6)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제 3 자에게 누설
- (7) 투자계약 외의 이면계약 체결
- (8) 운용사 임직원 및 그 특수관계인의 부당이득 수수
 - <부당이득의 예시>
 - . 업무관련자로부터 선물/접대/뇌물 등의 요구 또는 수령
 - . 취업/인사청탁
 - . 기타 위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래나 사실

2. 본인 및 특수관계자는 공정한 직무의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 과거 1 년내 기간에 없으며, 향후에도 다음의 거래를 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1) 피투자회사의 주식 취득, 자금대차,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의 거래관계
- (2) 피투자회사의 임원 또는 주주
- (3) 일반상거래 또는 용역거래

3. 본인은 다음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1)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
- (2) 벤처특별법, 조합규약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 및 규정 등 관련 규정의 위반을 통보받은 사실

4. 본인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현황과 비상장주식보유현황을 누락함이 없이 완전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본인은 투자조합 규약을 숙지하고 있으며, 특히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조합원의 책임,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의 원칙, 투자의 대상 및 방법, 투자의사결정 등에서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2018 년 4 월 4 일

심사역 : 조 준 연 (서명/인)

심사역 : 김 호 경 (서명/인)

경영자의 윤리 및 재무확인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KT&G타워 2층

2018년 4월 3일

2015 KIF-프리미어 IT 전문투자조합 귀중

이 확인서한은 귀 조합의 당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신하는 한 다음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윤리에 관한 사항

1. 우리는 귀 조합(업무집행조합원 포함, 이하 같음)의 투자와 관련하여 귀 조합의 조합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물품, 상품권 등 선물, 접대 및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우리는 귀 조합의 임직원 및 그 특수관계인과 과거 1년간 다음의 거래 또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으며, 귀 조합의 투자 및 회수가 종료될 때까지 그러한 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을 참회계법인 황기동 회계사(010-4661-3933)에게 즉시 통보할 것입니다.
 - (1) 주식투자 또는 매매
 - (2) 자금대차거래, 담보제공 또는 보증거래
 - (3) 임직원 관계 또는 인사관련 청탁
 - (4) 일반상거래 또는 자문 등 용역거래
 - (5) 조합의 투자계약 이외의 이면계약
 - (6)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거래 또는 중개행위
 - (7) 실질적으로 상기한 거래와 유사한 기타 경제적 거래
3. 우리는 귀 조합의 출자자, 펀드매니저, 기타 구성원에게 투자여부 및 투자조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

4. 내부통제제도의 수립과 운영 등 부정과 오류와 관련된 우리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1)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의 수립과 운영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 (2)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이나 부정의혹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귀 조합에게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5. 우리는 투자를 위해 필요한 모든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및 주주총회, 이사회 의 모든 의사록을 제시하였습니다.
 6. 우리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3에 의한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당사의 정상영업활동을 위한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특수관계자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귀 조합에 제공하였습니다.
 7. 우리는 귀 조합의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귀 조합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았으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유가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8. 금융기관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차입 금융기관명 및 주소 등의 정확한 현황을 귀 법인에게 누락 없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본 확인서 제출일 현재 제공한 지급보증, 제공받은 지급보증,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으며,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추가 부채는 없습니다.
 9. 우리가 작성한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이며,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한 회계원칙 및 중요 회계방침은 제출된 재무제표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별도로 제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0. 당사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의 모든 약정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11.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기록하였으며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하였습니다.
 - (1) 판매 및 구매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2) 기판매자산의 환매계약과 구매선택권
 - (3)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
 - (4) 당사에 불리한 매출이나 매입약정사항
 - (5) 환매조건부로 매출 또는 매입한 유가증권
 - (6) 선물환 거래 등에 관한 약정사항
 - (7) 당사가 타 회사 또는 개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것

- (8) 어음의 배서 또는 할인을 한 것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
 - (9) 당사가 관련되어 있는 계류 중인 소송
 - (10)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미결된 것
12. 우리는 재무제표에 반영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치를 중요하게 변경시킬 계획이나 의도가 없습니다.
 13. 재무제표작성일 현재 확정된 부채로서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부채는 없습니다.
 14.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에 대하여 국세청 또는 소관세무서의 경정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한 자료를 누락없이 제공하였으며, 경정 또는 신고된 법인세 등의 미납부액 또는 미지급액의 과소계상액은 없습니다.
 15. 회사는 모든 자산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도 담보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6. 우리는 모든 실제 부채와 우발채무를 적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 우리는 선물환계약 및 역외펀드 등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약정사항을 모두 제공하였으며, 이면계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회 사 명 (주) 해인퍼니셔스

대 표 이 사 김정민 (서명)

재 무 담 당 이 사 최재석 (서명)